자 위험 등급 3 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NH-Amundi 코리아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NH-Amundi 코리아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NH-Amundi 코리아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 호[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 • 지점

※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19 년 7 월 31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9 년 10 월 10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 조)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본 집합투자기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청약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이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투자판단을 내리기 전에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6.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합니다.

7. 투자자가 부담하는 후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환매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 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 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

※ 집합투자기구 명칭 및 펀드코드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564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56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A1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BA1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A18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P1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Q1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X724

- 목차(目次) -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붙임] 용어풀이

(작성기준일 : 2019.07.31)

NH-Amundi 코리아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펀드 코드:56415)

투자 위험 등급 3등급[다소높은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NH-Amundi 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3) 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80% 이상을 국내 및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주식의 상대적으로 높은 변동성에 따른 주식가격 변동위험 , 신흥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정성에 따른 신흥국가위험, 환율 변동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NH-Amundi 코리아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 사항을 발췌 요약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대부분을 투자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추가납입가능),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단위 : 천원)				
	판매수수료	총보수	판매보수	동종유형 총보수	1 년	2 년	3 년	5 년	10 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A)	없음	2.1462	1.1	1.96	259	525	798	1,364	2,9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5462	0.5	1.19	198	402	612	1,053	2,281

(주 1)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합성 총보수▪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 +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보수 (혹은 모투자신탁에서 발생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합성▪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 2 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31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 년 18.08.01 ~ 19.07.31	최근 2 년 17.08.01 ~ 19.07.31	최근 3 년 16.08.01 ~ 19.07.31	최근 5 년 14.08.01 ~ 19.07.31	설정일 이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A)(%)	2006-04-25	-10.06	-2.76	5.01	1.91	4.08
비교지수 (%)		-7.01	-2.25	5.31	2.06	4.82
수익률 변동성(%)		17.62	16.17	14.43	14.89	14.89

(주 1) 비교지수: MSCI China (65%) + KOSPI (25%) + Call Rate (10%) (비교지수 성과에는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음)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19.07.31 기준)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개,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국내외 주식형,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김현	1974	책임 (부장) 해외주식	10	1,583	-8.09	0.00	-3.90	-1.03	18 년 2 개월
이도규	1976	책임 (팀장) 국내주식	9	985	-8.09	0.00	-3.90	-1.03	10 년 7 개월

(주 1)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팀 및 주식운용 1 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운용전문인력 관리감독하에 담당본부내(혹은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 3)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5)'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유의 사항은 투자설명서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수익자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주식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발행회사 고유의 위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서도 급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은 다른 여타의 자산보다 그 변동성이 큰 특징이 있으며, 이로 인해 주식투자 시에는 투자원금의 손실 가능성이 매우 큰 위험이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업종의 환경 변화 등 기타 국제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흥국가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외투자 시 신흥국가에 투자하게 되므로 국가위험 측면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에 노출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신흥국가의 경우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투자수익률에 직/간접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모투자신탁은 해외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가치가 투자대상국 통화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아지면, 외화자산인 투자자산의 가치는 원화가치로 환산했을 때 낮아집니다. ※ 환위험관리 :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모투자신탁은 환헤지를 실시합니다. (외화자산[미국달러화 및 홍콩달러화] 순자산 평가액의 80%수준, 시장상황에 따라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란 선물환계약 등을 이용하여 펀드의 매수시점과 매도시점의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없애는 것을 뜻합니다. 즉,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헤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성장 등으로 인하여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됩니다

매입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2 영업일 기준가 매입 • 15 시 30 분 경과 후: 3 영업일 기준가 매입	환매 방법	• 15 시 30 분 이전: 4 영업일 기준가 7 영업일 지급 • 15 시 30 분 경과 후: 5 영업일 기준가 7 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 해당사항 없음 -		
기준가	·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 = (직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직전일 수익증권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 공시방법 – 서류공시 :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매일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매일 전자 공시		

과세		
	구분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2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2017 년 05 월 15 일 이후)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업자	NH-Amundi 자산운용㈜ (대표번호: 02-368-3600/ 인터넷 홈페이지: www.nh-amundi.com)		
운용관련 자문업자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회사명: Amundi (UK) Limited 주 소: 41 Lothbury, London EC2R 7HF, United Kingdom 업무자문 범위: 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정보와 자료 제공 및 경제 전망에 관한 조언 등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가능	모집.매출 총액	1 조
효력발생일	2019 년 10 년 10 일	존속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주요업무),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59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펀드)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있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높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는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C)'와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은 없습니다.**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는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C)'와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은 없습니다.**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nh-amundi.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nh-amundi.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564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56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A1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BA1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A18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P1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Q1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X724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 조

주 1) 이 집합투자기구는 모집(판매)기간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도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1) 모집기간: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판매회사 영업일에 모집 및 판매됩니다.

(2) 모집장소: 판매회사의 영업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www.nh-amundi.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펀드코드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	**564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5640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BA1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BA1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BA18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AP1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BQ1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BX724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일 시	주요내용
2006.04.25	최초설정
2009.05.02	적용 법규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변경 "농협 CA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주식투자신탁 1 호"에서 "NH-CA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 호[주식]"으로 명칭 변경
2009.07.17	자산운용부문 조직개편에 따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0.01.29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제한 정정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정정 주요주주회사 사명변경
2010.04.15	AI&해외투자본부장 변경에 따른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0.05.03	기존펀드 판매보수 인하에 따른 판매보수 정정
2010.12.07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1.10.26	해외 위탁자산 펀드매니저 변경
2011.12.19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2013.04.03	해외 위탁자산 펀드매니저 변경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반영 집합투자증권 관련 공시 서식 개정에 따른 정정
2013.07.04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운용실적 업데이트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 영업보고서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오기 정정

2013.11.21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반영 일부 조항 용어 정정 표기 (지분증권→주식)
2014.04.04	종류(Class) 신설 : Class S 수익증권 작성기준일 변경에 따른 정보 업데이트 신설 도로명 주소 반영 자본시장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조항 용어 정정(지분증권 → 주식)
2014.12.26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투자 증권시장 확대를 위한 관련 조항 변경
2015.05.07	자본시장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1 호에 의거한 투자설명서 정기갱신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운용전문인력 변경 투자신탁의 해지에 관한 법 개정사항 반영 법인 지방소득세 개정사항 반영
2015.09.04	책임운용전문인력 변경
2016.01.15	환매수수료 삭제 종류수익증권 삭제 및 신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6.02.26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 반영
2016.05.03	집합투자기구 명칭 변경 NH-CA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 호 [주식] →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투자신탁 1 호 [주식]
2016.07.02	투자위험 등급 분류 체계 개편 내용 반영
2016.07.30	판매 및 환매 기준시간 변경
2016.09.20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에 따른 결산 갱신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개정사항 반영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2017.05.15	- 클린클래스(Class CG) 추가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투자신탁재산의 매매 및 평가이익 유보) 등
2017.09.29	클래스 추가(Class S-P)
2018.04.02	운용인력 변경(박진호 → 이도규)
2018.05.16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
2018.05.28	수익증권 등에의 투자한도 변경
2018.07.30	- 모자형 집합투자기구로 변경 - 운용전문인력 변경(박주연 → 김현)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2018.08.06	- 모투자신탁 추가

	- 모투자신탁 추가로 인한 투자자문 관련 내용 신설 - 비교지수 변경
2018.09.06	모투자신탁 삭제 (NH-Amundi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019.05.31	- 투자신탁 결산으로 인한 재무제표 및 운용실적 갱신 - 변동성(표준편차) 변경사항 반영 등
2019.09.16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사항(2019.08.01) 반영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시행(2019.09.16)에 따른 변경
2019.10.10	투자자문회사 변경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탁계약기간"이란 투자신탁의 존속 기간을 의미하며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 즉 일반적인 용어로 투자자의 "저축만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상에 의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 5 부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1)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홈페이지참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 (여의도동,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 10 층) 02-368-3600 (www.nh-amundi.com)

주)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자문회사로부터 투자자문]

(1)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시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Amundi (UK) Limited' 의 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업무 내용은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해당펀드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Amundi (UK) Limited	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정보와 자료 제공 및 경제 전망에 관한 조언 등

(3) 회사의 개요

회사명	Amundi (UK) Limited
주소	41 Lothbury, London EC2R 7HF, United Kingdom
회사 개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인 Amundi Asset Management의 자회사로 다양한 투자자산운용, 트레이딩,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운용전문인력

(1) 책임운용전문인력(2019.07.31 기준)

구분	성명	생년	직위	운용경력년수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책임운용 전문인력	김현	1974	책임 (부장) 해외주식	18년 2개월	- 2007.12~현재 NH-Amundi 자산운용 글로벌 주식운용팀 - 2001.06~2007.11 코레이트자산운용 자산운용본부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책임운용 전문인력	이도규	1976	책임 (팀장) 국내주식	10 년 7 개월	- 2015.07~현재 NH-Amundi 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 2012.12~2015.04 Asiya Investments Hong Kong - 2008.08~2012.11 Asiya Investment Kuwait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없음

주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글로벌주식팀 및 주식운용 1본부에서 담당합니다. 상기인은 "책임운용전문인력"으로 이 투자신탁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전문인력을 말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부책임 운용전문인력을 지정하지 않았으며, 상기운용전문인력의 감독하에 담당 팀내 다른 운용전문인력의 운용도 가능합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2)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2019.07.31 기준)

성명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국내외 주식형)			
	집합투자 기구 수(개)	운용규모 (억원좌)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김현	10	1,583	-8.09	-	-3.90	-1.03
이도규	9	985	-8.09	-	-3.90	-1.03

주1) 위의 집합투자기구 수에는 모자형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의 주요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 및 수익률) 및 이력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기구 분류상 2차, 3차 분류기준)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당해 투자신탁은 팀운용이지만,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상기 책임운용인력 및 부책임운용인력이 운용한 펀드의 평균운용성과를 기재하였습니다.

(3)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내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운용부서	책임운용역	운용부서	책임운용역
2013. 6. 25	AI&해외투자본부	브누아 포 박주연	AI&해외투자본부	박주연
	주식운용본부	이승재	주식운용본부	이승재
2015. 5. 7	AI&해외투자본부	박주연	글로벌솔루션본부	박주연
	주식운용본부	이승재	주식운용 2 본부	윤태환

2015. 9. 4	글로벌솔루션본부	박주연	글로벌솔루션본부	박주연
	주식운용 2 본부	윤태환	주식운용 2 본부	박진호
2018.04.02	해외투자본부	박주연	해외투자본부	박주연
	주식운용 2 본부	박진호	주식운용 1 본부	이도규
2018.07.30	해외투자본부	박주연	해외투자본부	김현
	주식운용 1 본부	이도규	주식운용 1 본부	이도규

주 1) 최근 3 년간의 운용전문인력 변경 내역입니다.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2) 모자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법제 233 조에 의한 모자형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다음과 같으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②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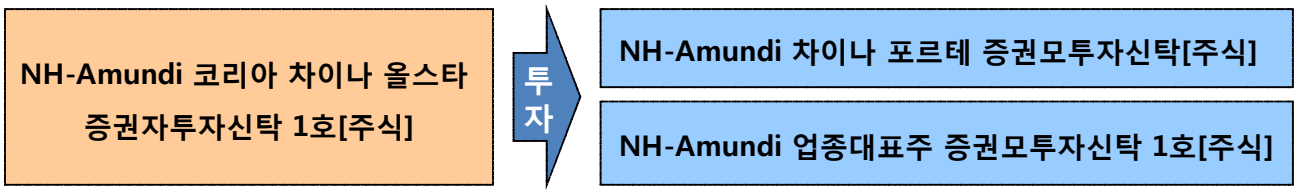

(3)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별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이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3 단계 구분 및 가입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특정금전신탁,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집합투자기구의 3 단계 구분(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펀드특성)에 따른 종류형 펀드의 대표적인 차이 및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수수료 선취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있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미징구형보다 높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는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C)'와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은 없습니다.**
	수수료 미징구	펀드 가입(혹은 추가불입)시점이나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가 없고, 판매보수가 수수료선취형 또는 수수료후취형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따라서 **특정시점*** 이전에 환매할 경우 수수료선취형보다 낮은 수수료를 포함한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특정시점: 수수료선취형과 수수료미징구형의 총비용이 같아지는 시점 * 특정시점 이전 환매시 수수료미징구형 가입이 유리 **** 동 펀드는 '수수료 미징구-오프라인(C)'와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익증권은 없습니다.**
	수수료 후취	펀드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수수료는 수수료선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이 되며, 펀드 가입 이후 일정기간 이후 환매시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판매수수료: 수수료선취형 > 수수료후취형 * 동 펀드의 수수료후취형은 3 년이상 투자시 판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판매경로	온라인	판매회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판매회사 홈페이에서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 클래스(종류형펀드)는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습니다. 다만, 온라인 전용클래스(종류형펀드)와 동일하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수수료미징구형 클래스(종류형편드)로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펀드의 투자기간(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클래스(종류형펀드)로 자동 전환되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 이연판매보수(CDSC: Contingent Deferred Sales Charge, 투자기간 경과(1 년 단위)에 따라 자동적으로 C1--> C2--> C3 --> C4[--> C5])로 전환되며 펀드 가입이후 4[5]년부터 C4[C5]의 판매보수가 적용

	무권유 저비용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를 받지 않고 펀드에 가입할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를 받아 가입하는 경우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개인연금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기관	법에서 정하는 펀드(집합투자기구),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에서 정한 전문투자자 또는 일정금액 이상을 가입하는 고액투자자(법인 or 개인), 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및 보험업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 입니다. * 고액 투자자의 최소투자금액은 펀드별 가입자격을 참고
	랩	판매회사의 일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혹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투자할 수 있는 클래스(종류형펀드)입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해외 및 국내 주식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 94 조제 2 항제 4 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모투자신탁	80% 이상	1.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2.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②법시행령 제 268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③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10% 이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다.)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기 ① 및 ③의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함)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상기 ① 및 ③의 투자한도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다음과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릅니다.

구분	투자제한 사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습니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함)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① 법제235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② 법제191조 및 제201조제4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릅니다.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습니다.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중국, 홍콩 등)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및 국내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에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을 투자합니다. 따라서, 해당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영향을 받습니다. 단,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당 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투자신탁명	주요 투자전략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기본투자전략] - Bottom-up 전략 + Top-down 전략을 기반으로 운용 (1) Bottom-up 전략: 각 국가에 속한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성, 벨류에이션, 수익성, 유동성 등의 펀더멘털 분석에 바탕을 둔 투자종목 선정 (2) Top-down 전략: 국가별, 업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 투자매력도를 감안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하향식 투자대상 선정 방법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투자대상국의 산업구조, 산업 성숙도, 업종별로 베타와 상관계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합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추구합니다 [종목선정전략] - 중국 성장의 핵심 종목 및 수혜주 - 중국 경제 성장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중국 IPO 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주목하여, IPO 종목 적극 투자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판단시 해외투자자문회사인 'Amundi (UK) Limited' 로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받으며,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은 NH-Amundi 자산운용이 최종 결정하여 수행합니다.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각 업종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각 업종 대표기업의 과거 수익률 분석을 통해볼 때, 업종 대표기업은 업종내 하위 기업들에 대비해서 성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들 대표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역시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를 둔 운용전략입니다. - 업종대표종목은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 또한 업종 대표기업은 재무위험 및 경영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주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하락 폭이 낮아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략에 대해서는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위험발생 가능성을 사전적, 사후적으로 구분하여 위험관리를 수행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대부분의 자산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기 때문에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에 준하게 되므로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

①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자산(미국달러화, 홍콩달러화)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위험 헤지를 실행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환헤지전략의 수행은 환헤지비용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의 수행이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헷지란? 환헷지란 선물환 계약 등을 이용하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을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해외펀드는 대부분은 해외통화로 자산을 매입하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추가적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헷지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으며 환헷지 계약의 만기 후 재계약을 할 경우 헷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②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변화를 예측하여 시장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의 강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 탄력성이 높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증권시장의 약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모투자신탁의 위험관리에 대해서는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China (65%) + KOSPI (25%) + Call Rate (10%)

MSCI CHINA Index: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에서 발표하는 중국관련 주가지수로 중국 및 홍콩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로 나타낸 것입니다.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중국 및 홍콩시장에 주로 투자하고 한국시장에도 일부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 모투자신탁의 비교지수에 대해서는 "제 2 부 별첨 1. 모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해외(중국, 홍콩 등) 및 국내주식에 투자신탁자산의 대부분을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된 투자대상이 되는 자산가치의 가격 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지정참가회사,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다음 투자위험은 작성일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위험을 기재한 것이며,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을 기재한 것이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향후 운용과정 등에서 현재로는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하거나 현재 시점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기재에 누락되어 있는 위험의 정도가 커져 그 위험으로부터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 손실위험	관련법령은 집합투자기구 투자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고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및 관련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증권시장 가격변동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변동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 변동위험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장위험	신탁재산을 국내외 주식, 채무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금융시장의 주가, 이자율 및 투자대상 국가 및 투자대상 업종의 환경 변화 등 기타 국제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국내외 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레버리지효과(지렛대 효과)로 인하여 파생상품 그 자체에 투자되는 금액보다도 상당히 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환율 변동위험	당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외화표시자산(해외주식 등)에 투자하므로 국내통화와 투자대상국통화와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영위험	해외 투자의 경우 국내 투자와 달리 운영위험에 노출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개장과 폐장 시간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를 위한 환율의 적용에 있어서 제반 규정에 따라 상이한 참조 환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제 사무의 처리의 복잡성, 현금 운용의 복잡성 등 해외 투자의 경우 일반 운영위험은 일반 국내 투자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증권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고 환매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게 소요됨에 따라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 기간동안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 (기타)	국내외 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채무 불이행 위험이 커짐으로 인해 신탁재산의 급격한 가치 하락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다음 각 호의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는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임의 해지)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 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 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특히, 상기 3, 4 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의무 해지)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의 수익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측정합니다. 이 투자신탁의 변동성은 ***14.26%***로 6등급 중 **3등급**에 해당되는 **다소 높은 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분류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급	1등급 (매우높은위험)	2등급 (높은위험)	3등급 (다소높은위험)	4등급 (보통위험)	5등급 (낮은위험)	6등급 (매우낮은위험)
표준편차	25%초과	25%이하	15%이하	10%이하	5%이하	0.5%이하

※설정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실제 변동성은 매년 결산시점에 측정하며, 해당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펀드의 주간 수익률의 연환산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및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위험등급분류는 NH-Amundi자산운용의 자체기준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매입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의 다음 영업일(D+1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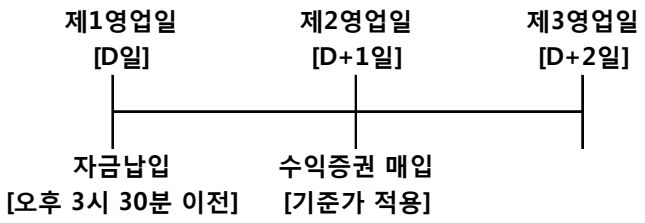

나. 오후 3 시 30 분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D 일)로부터 제 3 영업일(D+2 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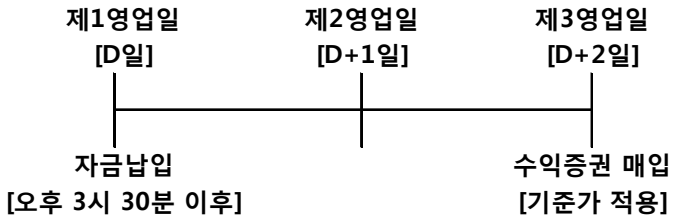

다.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 원으로 합니다.

(3) 종류별 모집제한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제한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온라인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특정금전신탁,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상의 특별계정,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전문투자자 또는 50억원 이상 매입한 법인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의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수익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자(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 시 30 분 이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오후 3 시 30 분 이전에 매입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나.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청구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7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나. 오후 3 시 30 분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 7 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주)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투자신탁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를 한 당일에 한하여 판매회사 영업점의 영업시간 중에 가능합니다. 다만, 오후 3 시 30 분 이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오후 3 시 30 분이전에 환매청구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 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제 5 영업일 전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나. 법령 또는 볍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지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1.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나.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나.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다.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3.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집합투자업자는 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다. 전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님에 따라 해당사항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 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산정주기	매일 산정합니다.
공시주기	매영업일 공시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고·게시 또는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nh-amundi.com) 및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주) 이 투자신탁은 펀드간 판매보수가 차등 적용되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서 각 종류간에 기준가격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 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일 현재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
-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의 기준에 근거하여 평가합니다.

구 분	내 용
상장증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증권시장을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장내파생상품 및 해외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에서 공표하는 가격
채무증권	1.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2. 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평가일 현재 신뢰할만한 시가가 없는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관련법령에 따라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 1. 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 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 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아래의 자가 제공한 가격 (1) 채권평가회사 (2)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3) 신용평가업자 (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5) 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6) (1)~(5)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등록 등을 받은 자 (7) (1)~(6)에 준하는 외국인 4. 환율 5.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수익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전환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	-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 (Ci)	-	-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Cw)	-	-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	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	-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	-		
부과시기	매입 시	환매 시	전환 시	환매 시

주1) Class S의 후취판매수수료 관련 사항: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이익분배금으로 매수한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 하며 수익증권통장거래약관에 따른 목적식 투자고객에 대하여 후취판매수수료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의 범위 내에서 투자신탁 판매회사의 재량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2) 상기 표의 '가입자격'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의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의 (2) 종류별 가입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집합투자업자보수	판매회사보수	신탁업자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총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증권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0.9692	1.1	0.06	0.017	2.1462	2.4405	4.5867	2.5309	1.96	0.15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0.9692	0.5	0.06	0.017	1.5462	1.8405	3.3867	1.9309	1.19	0.1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0.9692	0.03	0.06	0.017	1.0762	1.3705	2.4467	1.4609	-	0.156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0.9692	0	0.06	0.017	1.0462	1.3405	2.3867	1.4309	-	0.156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0.9692	0.35	0.06	0.017	1.3962	1.7133	3.1095	1.7845	-	0.129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 (CG)	0.9692	0.55	0.06	0.017	1.5962	1.8905	3.4867	1.9809	-	0.1568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0.9692	0.28	0.06	0.017	1.3262	1.6131	2.9393	1.7035	-	0.1554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투자신탁의 일부 또는 전부해지 시					사유발생시	-	-	-	사유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 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8.04.25 ~ 2019.04.24]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18.04.25 ~ 2019.04.24]

주3)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은 작성기준일 현재 설정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총보수·비용 비율은 기타비용 비율을 합산하지 아니한 수치입니다.

주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신고서의 작성 시점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종류(Class)의 비용(기타비용, 총보수· 비용 등)의 경우 설정된 종류(Class)의 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주6)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전월말 기준)

※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 대한 보수 지급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와 이 투자신탁이 매입하는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상이할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에서 해당 모투자신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 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서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시한다. 모투자신탁 및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다수일 경우 이 투자신탁의 순자산총액에서 각 모투자신탁의 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배분된 신탁업자 보수를 이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신탁업자보수에서 각 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급되도록 이 투자신탁의 신탁업자에게 지시한다.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1 년후	2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250	507	769	1,315	2,802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59	525	798	1,364	2,90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89	383	584	1,004	2,174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98	402	612	1,053	2,28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i)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40	286	437	755	1,655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50	305	466	805	1,76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37	280	427	739	1,621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47	299	456	788	1,73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76	357	544	937	2,03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83	372	567	976	2,1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94	393	599	1,030	2,228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203	412	628	1,079	2,334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	165	336	513	884	1,926
	판매수수료 및 합성 총보수・비용	175	355	542	933	2,034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신고서의 작성 시점 현재 설정되지 아니한 투자신탁 종류(Class)의 투자기간별 수수료·비용 예시의 경우 이 투자신탁과 유사한 투자신탁, 또는 설정된 투자신탁 종류(Class)의 추정치로 산출하였습니다.

주3) Class S 수익증권의 경우 3년 이내 환매 시 후취판매수수료 0.15%가 부과된다고 가정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상기 표의 3년후, 5년후, 10년후 예시금액에는 후취판매수수료를 반영하지 아니함.)

*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1)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종류형 투자신탁의 경우는 해당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합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제 238 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 240 조제 1 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법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 유보에 따른 유의사항>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수익자는 (1)에 의하여 분배되는 이익금을 금전 등으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3)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4)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 년간 이익분배금 도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수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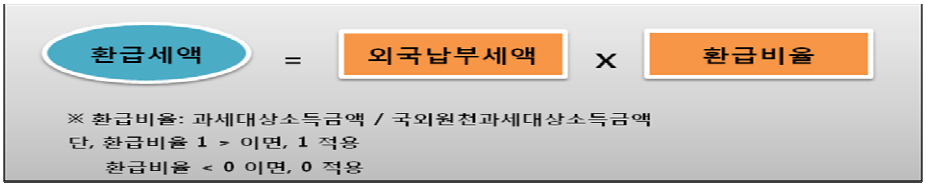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7 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 등은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대상인 국내외 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 및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시 환차손이 과세대상 이익인 채권이자, 주식배당, 환헤지 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대해 과세함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유의사항】

환헤지 거래를 수행하는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환헤지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여전히 과세대상 이익이므로 상황에 따라서는 세금 측면에서 중대하고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 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주민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4)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7에 따른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이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이 투자신탁으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한다)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됨. 자세한 관련사항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 주요 사항]

구 분	주요 내용
가입기한	2017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도	1인당 3천만원(모든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대상펀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환율변동에 의한 손익 포함)은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
세제혜택적용기간	가입일부터 10년까지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2부 별첨1]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1.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에 상장된 외국주식, 이를 기초로 중국(홍콩을 포함한다) 외 국가에 상장된 DR 및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에 본사를 둔 기업이 발행한 해외에 상장된 외국주식 등에 투자하여 관련주식의 가치상승에 따른 자본이득 획득추구를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주식 및 외국주식	80% 이상	**주식**: 법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 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 제 15 항 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외국주식**: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다만,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에 상장된 외국주식, 이를 기초로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외 국가에 상장된 DR 및 중국(홍콩을 포함한다)에 본사를 둔 기업이 발행하여 해외에 상장된 외국주식 등"에 80% 이상 투자)
②채권 및 외국채권	40% 이하	**채권**: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BBB-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외국채권**: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이나 증서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 화증권으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단, 상기에 적용되는 신용평가등급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나, 사채권의 경우 취득시 2 이상(신용평가기관의 업무정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 이상)의 국제신용평가 기관으로부터 BBB-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③어음 및 외국어음	40% 이하	**어음**: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이상인 것 **외국어음**: 외국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④자산유동화증권 및 외국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 회사법 또는 한국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 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외국자산유동화증권**: 외국정부 또는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또는 증서로서 상기의 성질을 구비한 것
⑤파생상품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집합투자재산 (총자산)의 100 분의 10 이하	장내파생상품(해외장내파생상품 포함) 및 장외파생상품 (해외장외파생상품 포함)
⑥집합투자증권 등	30%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제 9 조제 21 항에서 규정한 집합투자증권, 수익증권 또는 집합투자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통화로 표시되어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것
⑦증권의 대여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⑧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⑩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등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단기대출(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를 말한다)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3. 상기 제 1 호 및 제 2 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⑪증권의 차입	상기 ①~④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 이하	

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⑧, ⑪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⑤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의 "②채권 및 외국채권 및 ③어음 및 외국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2) 투자제한

구분	투자제한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 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 파생결합증권 (3)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4)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 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 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7)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거래	가. 법시행령 제80조제5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투자신탁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업규정 제4-52조 제2항에서 정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한정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 및 투자자의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염려가 없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다. 라.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그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80조제11항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계열회사 발행증권	법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7.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법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법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8.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 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9.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10. 투자한도 초과	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발행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의 사유로 구분 2 내지 5 의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부도 등으로 투자신탁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 나. 구분 2·구분 4 의 나, 다, 라· 구분 5 의 가, 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투자신탁은 자산총액의 80% 이상을 중국(홍콩 포함)에 상장된 주식, 이를 기초로 중국(홍콩 포함)외 국가에 상장된 DR 및 중국(홍콩 포함)에 본사를 둔 기업이 발행하여 해외에 상장된 주식 등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서 투자대상 자산의 장기적 가치상승에 의한 자본이득 획득추구를 목적으로 운용합니다. 단, 이러한 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해당 자산의 가치하락이 발생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운용전략

◈ 기본투자전략

- Bottom-up 전략 + Top-down 전략을 기반으로 운용

(1) Bottom-up 전략: 각 국가에 속한 개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성, 벨류에이션, 수익성, 유동성 등의 펀더멘털 분석에 바탕을 둔 투자종목 선정

(2) Top-down 전략: 국가별, 업종을 대상으로 성장가능성, 투자매력도를 감안하여 투자대상을 선정하는 하향식 투자대상 선정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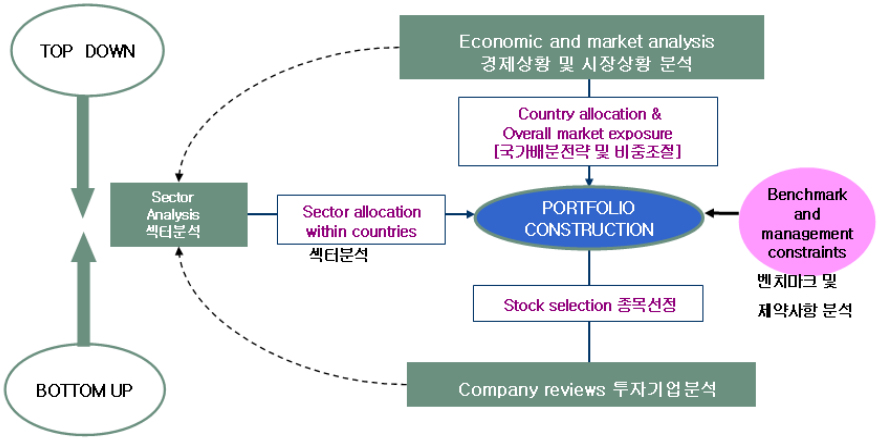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구성 등 투자판단시 해외투자자문회사인 'Amundi (UK) Limited' 로부터 투자자문서비스를 받으며, 투자대상종목 및 투자비율 등은 NH-Amundi 자산운용이 최종 결정하여 수행합니다.

◈ 포트폴리오 구성전략

- 투자대상국의 산업구조, 산업 성숙도, 업종별로 베타와 상관계수 등을 고려하여 가장 효율적인 조합

을 나타내는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추구합니다.

※ 베타(Beta): 베타(Beta)는 개별 증권과 전체 증권시장 사이의 위험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척도 입니다. 베타(Beta)값이 1을 기준으로 높을수록 시장민감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베타가 낮을수록 시장민감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관계수(Coefficient of correlation): 각 자산의 가치가 같은 방향 혹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어느 정도 인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이 때, 각각의 자산의 가치가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클수록, 그 자산들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전체의 위험은 분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종목선정전략

- 중국 성장의 핵심 종목 및 수혜주
- 중국 경제 성장의 효과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중국 IPO 기업의 꾸준한 성장세를 주목하여, IPO 종목 적극 투자

※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비상장기업이 거래소(국내의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응하는 국내외 증권거래소 혹은 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신규로 주식을 발행하거나, 이미 발행된 기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공개로 인해 대상기업은 자금조달능력이 확충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수단이 제공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2) 위험관리

- 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변화를 예측하여 시장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의 강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이 탄력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증권시장의 약세가 예상될 경우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외화자산의 투자에 따르는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통화관련 장내파생상품 및 장외파생상품(예: Forward 계약 등)을 사용하여 환위험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이 투자신탁의 대부분의 자산은 홍콩증시를 통하여 홍콩달러화로 투자되고 있으며, 홍콩달러는 미국 달러에 연동되어 움직이므로 해당 통화 대비 한국원화의 환율이 변동하는 경우 손실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환율변동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외화자산(미국달러화, 홍콩달러화)에 대하여 80% 수준의 환위험 헤지를 실행할 예정이며, 시장상황에 따라 환헤지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라 투자신탁의 가치 변동을 초래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위험에 대한 손실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향후 통화 정책 변경으로 인하여 환헤지 수단이 존재하지 않게 되거나 마땅한 대체 수단이 없을 경우에 환헤지 전략은 수정,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환헤지 전략이 변동되는 경우, 투자자는 예상했던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헤지 전략은 환율변동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만 사용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환헤지 전략으로 투자신탁의 수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이러한 환헤지 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투자자에게 환율변동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때로는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 환헤지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의 사례와 같이 추가 손실 또는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 1] 투자자 A씨는 현금 100,000원을 1$ = 1000원의 환율로 환전, $100를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 1년뒤 환율이 떨어져 1 $=900원이 된 경우 수익률이 10%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환율 하락으로 인해 오히려 원금이 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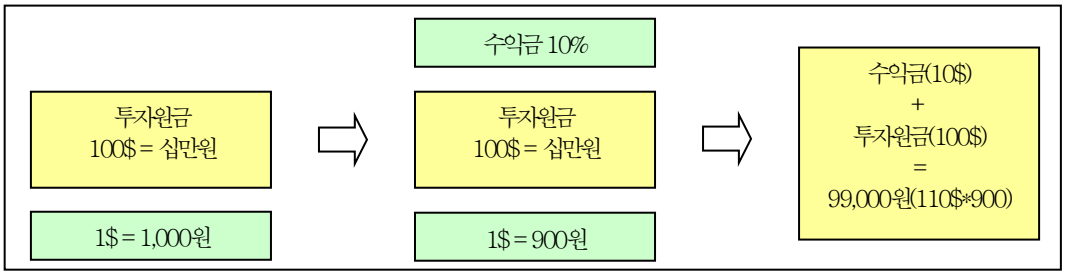

[사례 2] 투자자 A씨는 현금 100,000원을 1$ = 1,000원의 환율로 환전, $100를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에 투자함, 1년뒤 환율이 상승하여 1$=1,100원이 된 경우 수익률이 10% 발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환율상승으로 추가적인 수익을 얻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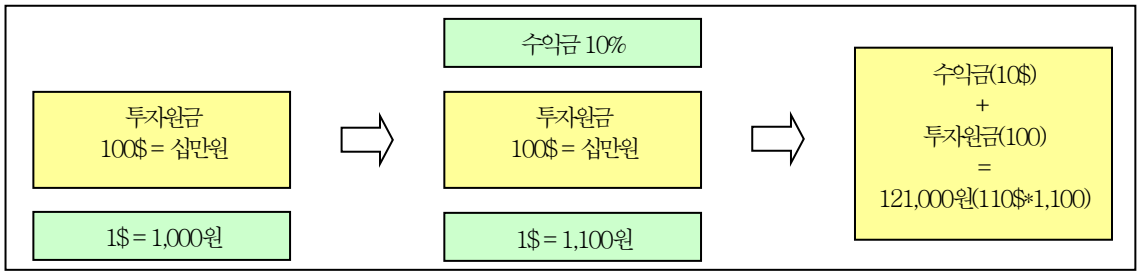

※ 이 투자신탁은 환율변동위험의 억제를 위하여 환헤지를 수행합니다.

상기의 사례에서 환헤지를 수행하여, 1$ = 1,000 원으로 모든 외화자산에 대하여 완벽하게 고정시켰다고 가정하면, 환율변동과 무관하게 투자원금과 이익금은 110,000 원(110$ * 1,000 원)이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사례 1)의 경우 손실방지의 효과가 있지만 (사례 2)의 경우 추가적인 이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수 도 있습니다.

※ 환헤지 전략의 수행은 환헤지 비용을 수반합니다. 또한 환헤지 전략의 수행이 환율변동위험의 완전한 제거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MSCI China(90%)+ Call Rate (10%)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중국 및 홍콩시장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80% 이상을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외국주식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외국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외국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의 폭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특성 상, 환헤지 전략을 수행하나, 이러한 환헤지 전략의 수행이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경우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도 있습니다.

2.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 1 호[주식]

가. 집합투자기구의 목적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이상을 각 업종의 대표 기업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주식시장 상승대비 초과수익 획득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투자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하여 투자원금손실도 가능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및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1) 투자대상

※ 투자대상 자산 중 법 제4조에 따른 증권에 대하여는 그 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전자증권법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해당 권리를 포함합니다.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①주식	60% 이상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유한회사·익명조합의 출자지분, "민법"에 따른 조합의 출자지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
②채권	40% 이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
③어음	40% 이하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시행령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취득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④자산유동화증권	40% 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⑤장내파생상품	위험평가액 집합투자재산 (총자산)의 100분 10 이하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선물, 주식옵션 등 <헷지 및 투자목적> 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국채선물옵션 등 <헷지 및 투자목적>
⑥수익증권 등	5%이하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법 제 189 조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 196 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다만, 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는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⑦증권의 대여 및 증권의 차입	증권의 대여는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자산총액의 20%이하	
⑧환매조건부 매도	투자신탁이 보유하는 증권총액의 50%이하	
⑨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 과의 거래	운용하고 남은 현금을 신탁업자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방법	
⑩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운용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에의 예치: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자산운용회사는 상기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의 화의 또는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결정한 채권 및 기업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1.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① ~ ④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라. 및 마.의 경우에는 투자 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 일 이내로 함 가.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 월간 나.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다.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 월간 라.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마.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① ~ ④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2.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⑤~⑩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3. ⑤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시행령 제 84 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는 제외한다)과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가.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제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단, 집합투자증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며 법시행령 제 80 조제 3 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 69 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행위

나. 다음과 같은 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1)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제가목의 것은 제외한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2) 파생결합증권

(3)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4)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5)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6)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 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7)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다.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시가총액비중(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 매월 말일을 기준을 산정하며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이 10%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비중까지 투자 하는 행위

3.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4. 파생상품 거래

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5 항에서 정하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업자(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1) 집합투자업자(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외화자산으로 100 분의 70 이상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와 비슷한 것으로서 외국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 증권(법제 279 조제 1 항에 따른 외국집합투자증권을 포함한다)

(3) 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재산을 둘 이상의 다른 집합투자업자(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용하는 경우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같은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의 100 분의 90 이상을 외화자산에 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같은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제 5 호 가목의(2)의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100 분의 30 까지 투자할 수 있고,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경우로서 제 5 호가목의 (1), (2)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의 100 분의 100 까지 투자할 수 있다.

다.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100 분의 40 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 분의 5 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마.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투자신탁(법제 279 조제 1 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한다.

바.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와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판매회사가 받는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의 합계가 법시행령 제 80 조제 11 항의 기준을 초과하여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6. 기타

투자자 보호 또는 집합투자재산의 안정적 운용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행위

가. 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 총액의 범위에서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에 속하는 증권의 범위에서 100 분의 50 을 초과하여 증권을 대여하는 행위

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 범위에서 100 분의 20 을 초과하여 증권을 차입하는 행위

7. 금전의 차입

가.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

(1) 법제 235 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법제 191 조 및 제 201 조제 4 항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나. "가"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가"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8. 금전의 대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시행령제 34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단기대출은 할 수 있다.

9. 채무보증 및 담보제공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집합투자기구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가.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나. 2. 동일종목 투자제한~6. 기타(4. 파생상품 거래의 라목 제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2. 동일종목 투자제한" 및 "4. 파생상품 거래. 나, 다, 및 라" 및 "5.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 가 및 나"**의 규정은 최초 설정일로부터 1 월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1)투자대상의 ②채권 및 ③어음"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 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 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각 업종 대표기업으로 구성된 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으로 자본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 각 업종 대표기업의 과거 수익률 분석을 통해볼 때, 업종 대표기업은 업종내 하위 기업들에 대비해서 성장성 및 수익성 측면에서 우월한 성과를 구현하고 있으며, 이들 대표기업의 주식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역시 시장 대비 초과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를 둔 운용전략입니다.
- 업종대표종목은 철저한 기업분석을 통해 시장대비 초과수익을 실현하고 시장점유율, 시장지배력,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자 합니다.
- 또한 업종 대표기업은 재무위험 및 경영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에 주목하여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하락 폭이 낮아 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위험관리

- 이 집합투자기구는 장기적인 위험관리를 위하여 시장변화를 예측하여 시장상황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주식에 투자합니다. 예를 들어, 증권시장의 강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 탄력성이 높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고 증권시장의 약세가 예상될 경우 가격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주식에 대한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3) 투자신탁의 비교지수(벤치마크)

- KOSPI (100%)
-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특성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상기의 비교지수(벤치마크)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변경된 비교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안내할 계획입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주) 상기의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계획은 이 투자신탁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60%이상을 주식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로서 주식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손실의 폭은 투자자가 예상치 못한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투자신탁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13기(2018.04.25 - 2019.04.2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2기(2017.04.25 - 2018.04.2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제 11기(2016.04.25 - 2017.04.24)	회계감사면제	해당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코리아차이나올스타증권자1호[주식] [단위 : 원]

통합 대차대조표			
항 목	제 13기	제 12기	제 11기
	(2019.04.24)	(2018.04.24)	(2017.04.24)
운용자산	16,647,695,789	19,840,460,059	27,685,397,053
증권	16,519,378,385	18,831,952,329	25,770,861,721
파생상품	0	-55,443,023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28,317,404	1,063,950,753	1,914,535,332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78,925,582	458,826,390	238,296,634
자산총계	16,726,621,371	20,299,286,449	27,923,693,687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75,326,911	426,702,528	241,262,269
부채총계	175,326,911	426,702,528	241,262,269
원본	15,429,146,172	17,344,402,444	29,424,602,326
수익조정금	-302,388,510	-1,554,329,137	-511,619,375
이익잉여금	1,424,536,798	4,082,510,614	-1,230,551,533
자본총계	16,551,294,460	19,872,583,921	27,682,431,418

코리아차이나올스타증권자1호[주식] [단위 : 원, %]

통합 손익계산서			
항 목	제 13기	제 12기	제 11기
	(2018.04.25 - 2019.04.24)	(2017.04.25 - 2018.04.24)	(2016.04.25 - 2017.04.24)
운용수익	-863,380,217	5,651,959,806	4,267,795,163
이자수익	4,320,188	9,991,710	15,279,253
배당수익	195,270,711	523,861,903	700,116,916
매매/평가차익(손)	-1,062,971,116	5,118,106,193	3,552,398,994
기타수익	0	0	0
운용비용	321,698,235	429,569,161	551,796,694
관련회사 보수	321,206,735	425,900,161	545,076,194
매매수수료	491,500	3,669,000	6,720,500
기타비용	53,495,660	114,025,418	144,648,791
당기순이익	-1,238,574,112	5,108,365,227	3,571,349,678
매매회전율	25.60	86.88	69.95

주1) 요약 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 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연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 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 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2) 위 재무재표는 운용 펀드를 대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다만, 대차대조표의 부채 및 자본항목과 손익계산서의 비용항목은 각 개별 종류 수익증권의 해당 항목 값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주3) "통합재무정보상의 대차대조표"와 "통합감사(BSPL)상의 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는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4) "통합재무정보상의 손익계산서"와 "통합감사(BSPL)상의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은 동일하나 개별항목의 계정과목 분류는 상이할수 있습니다.

주5)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대차대조표

통 합 대 차 대 조 표

투자신탁명 : [단위:원]

과 목	제13기(2019.04.24) 금 액		제12기(2018.04.24) 금 액		제11기(2017.04.24) 금 액	
자 산						
운 용 자 산						
현금및예치금		128,317,404		1,063,950,753		1,914,535,332
1. 현금및현금성자산	128,317,404		1,049,488,753		1,914,535,332	
2. 예치금						
3. 증거금			14,462,000			
대출채권						
1. 콜론						
2. 환매조건부채권매수						
3. 매입어음						
4. 대출금						
유가증권		16,519,378,385		18,831,952,329		25,770,861,721
1. 지분증권			17,633,609,541		24,677,308,164	
2. 채무증권						
3. 수익증권	16,519,378,385		1,197,364,650		1,093,553,557	
4. 기타유가증권			978,138			
파생상품				-55,443,023		
1. 파생상품			-55,443,023			
부동산과 실물자산						
1. 건물						
2. 토지						
3. 농산물						
4. 축산물						
기타운용자산						
1. 임차권						
2. 전세권						
기 타 자 산		78,925,582		458,826,390		238,296,634
1. 매도유가증권미수금			403,398,952			
2. 정산미수금					14,924,000	
3. 미수이자	112,168		527,039		796,126	
4. 미수배당금			18,583,410		24,223,723	
5. 기타미수입금	78,813,414		22,257,099		136,713,285	
6. 기타자산			14,059,890		61,639,500	
7.수익증권청약금						
자 산 총 계		16,726,621,371		20,299,286,449		27,923,693,687
부 채						
운 용 부 채						
1. 옵션매도						
2.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기 타 부 채		175,326,911		426,702,528		241,262,269
1.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261,506,575			
2. 정산미지급금			14,322,000			
3. 해지미지급금	90,076,526		44,417,530		95,556,670	
4. 수수료미지급금	76,581,855		88,840,937		121,081,327	
5. 기타미지급금						
6. 기타부채	8,668,530		17,615,486		24,624,272	
부 채 총 계		175,326,911		426,702,528		241,262,269
자 본						
1. 원 본	15,429,146,172		17,344,402,444		29,424,602,326	
2. 집합투자기구안정조정금						
3. 이월잉여금	1,122,148,288		2,528,181,477		-1,742,170,908	
(발행좌수 당기: 15,429,146,172 좌	이익잉여금	1,424,536,798		4,082,510,614		-1,230,551,533
전기: 17,344,402,444 좌	수익조정금	-302,388,510		-1,554,329,137		-511,619,375
전전기: 29,424,602,326 좌)						
(기준가격 당기: 1,095.58 원						
전기: 1,220.99 원						
전전기: 981.91 원)						
자 본 총 계		16,551,294,460		19,872,583,921		27,682,431,418
부 채 와 자 본 총 계		16,726,621,371		20,299,286,449		27,923,693,687

다. 손익계산서

통 합 손 익 계 산 서

투자신탁명 : [단위:원]

과 목	제13기(2018.04.25-2019.04.24) 금 액		제12기(2017.04.25-2018.04.24) 금 액		제11기(2016.04.25-2017.04.24) 금 액	
운 용 수 익						
1. 투자수익		199,590,899		533,853,613		715,396,169
1. 이 자 수 익	4,320,188		9,991,710		15,279,253	
2. 배당금수익	195,270,711		523,861,903		700,116,916	
3. 수수료수익						
4. 임대료수익						
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5,160,986,613		11,615,845,343		14,799,380,693
1. 지분증권매매차익	4,249,533,294		3,998,520,855		7,037,883,168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익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익	125,851,000		1,302,616,000		3,672,381,896	
4. 지분증권평가차익			4,796,386,286			
5. 외환거래/평가차익	524,511,720		800,883,643		2,248,710,203	
6. 현금및대출채권매매/평가차익						
7. 기타거래차익	261,090,599		717,438,559		1,840,405,426	
3.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6,224,449,229		6,501,408,150		11,253,702,199
1. 지분증권매매차손	162,404,807		737,914,397		2,217,540,839	
2. 채무증권매매/평가차손						
3. 파생상품매매/평가차손	200,955,500		1,249,271,000		3,706,606,396	
4. 지분증권평가차손	4,898,223,147					
5. 외환거래/평가차손	217,016,436		878,217,714		2,297,822,460	
6. 대손상각비						
7. 현금및대출채권매매차손					110,185	
8. 기타거래손실	745,849,339		3,636,005,039		3,031,622,319	
운 용 비 용		374,702,395		539,925,579		689,724,985
1. 운용수수료	122,927,115		149,947,798		191,871,455	
2. 판매수수료	188,014,396		261,671,985		334,931,557	
3. 수탁수수료	10,265,224		14,280,378		18,273,182	
4. 투자자문수수료						
5. 임대자산관련비용						
6. 기타비용	53,495,660		114,025,418		144,648,791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1,238,574,112		5,108,365,227		3,571,349,678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0.080274961		0.294525294		0.121372912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코리아차이나올스타증권자1호[주식]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4.25 - 2019.04.24	164	200	6	6	27	31	142	166
2017.04.25 - 2018.04.24	283	278	9	10	129	145	164	200
2016.04.25 - 2017.04.24	386	330	10	9	113	103	283	278

(주1) 2017.04.25 - 2018.04.24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564,400좌/3,131,118원

가. 종류형펀드

코리아차이나올스타증권자1호[주식]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4.25 - 2019.04.24	173	198	6	6	25	27	154	165
2017.04.25 - 2018.04.24	294	277	9	10	130	139	173	198
2016.04.25 - 2017.04.24	392	328	10	9	109	96	294	277

(주1) 2017.04.25 - 2018.04.24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 좌수 / 금액 : 2,733,061좌/3,131,118원

코리아 차이나 올스타 증권자투자신탁 1호[주식]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4.25 - 2019.04.24	0	0	0	0	0	0	0	0
2017.04.25 - 2018.04.24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코리아차이나올스타증권자1호[주식]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단위:억좌, 억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지분수)	금액
2018.04.25 - 2019.04.24	0	0	0	0	0	0	0	0
2017.04.25 - 2018.04.24	0	0	0	0	0	0	0	0
2016.04.25 - 2017.04.24	0	0	0	0	0	0	0	0

(주1) 종류형집합투자기구일 경우 종류별로 작성하고,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은 주석사항으로 별도 표시한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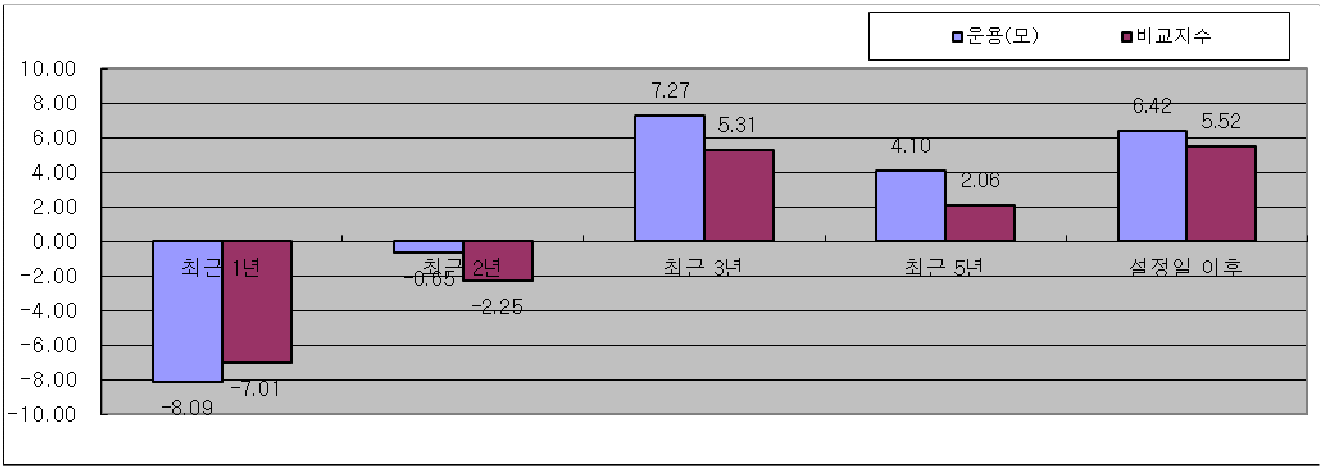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8.08.01 ~ 19.07.31	17.08.01 ~ 19.07.31	16.08.01 ~ 19.07.31	14.08.01 ~ 19.07.31	06.04.25 ~ 19.07.31
운용(모)	-8.09	-0.65	7.27	4.10	6.42
비교지수	-7.01	-2.25	5.31	2.06	5.52
수익률변동성(%)	17.62	16.17	14.43	14.89	14.8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10.06	-2.76	5.01	1.91	4.08
비교지수	-7.01	-2.25	5.31	2.06	4.82
수익률변동성(%)	17.62	16.17	14.43	14.89	14.8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9.31				-5.00
비교지수	-7.01				-4.76
수익률변동성(%)	17.62				16.8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9.36	-2.01	5.81	3.08	4.29
비교지수	-7.01	-2.25	5.31	2.06	3.20
수익률변동성(%)	17.62	16.17	14.43	14.89	14.89

주1) 비교지수 : (1 * 0.65*[MSCI_CH]+0.25*[KOSPI]) + (0.1 * [CALL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이며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익률 변동성은 운용펀드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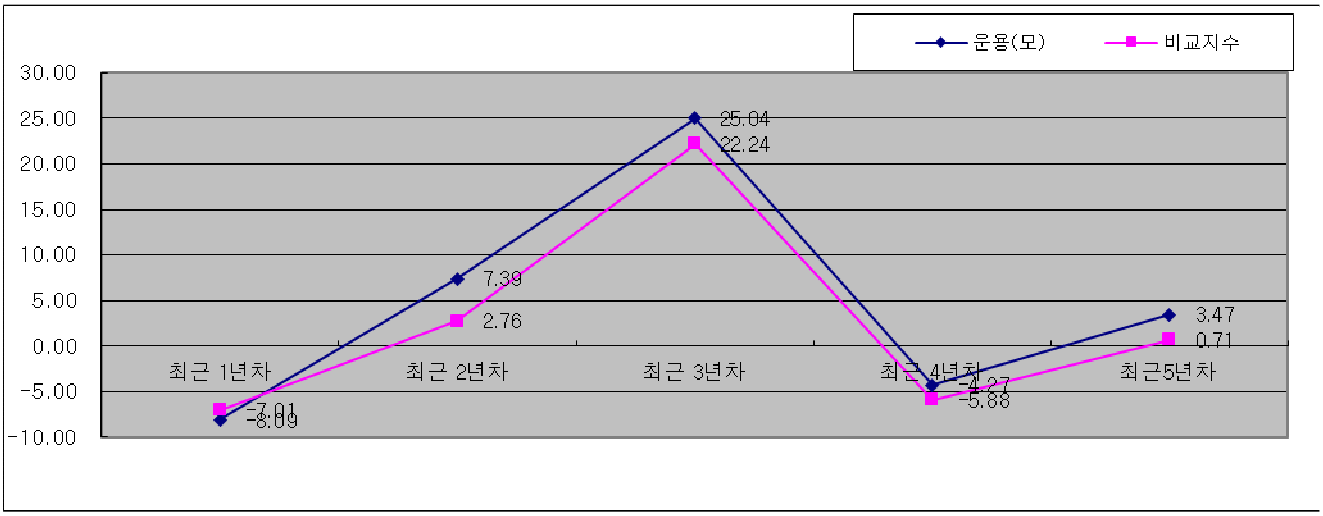

[단위:%]

기간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18.08.01 ~ 19.07.31	17.08.01 ~ 18.07.31	16.08.01 ~ 17.07.31	15.08.01 ~ 16.07.31	14.08.01 ~ 15.07.31
운용(모)	-8.09	7.39	25.04	-4.27	3.47
비교지수	-7.01	2.76	22.24	-5.88	0.71
수익률변동성(%)	17.62	14.81	10.14	17.59	12.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A)	-10.06	5.14	22.46	-6.30	1.30
비교지수	-7.01	2.76	22.24	-5.88	0.71
수익률변동성(%)	17.62	14.81	10.14	17.59	12.57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9.31	0.78			
비교지수	-7.01	-1.26			
수익률변동성(%)	17.62	14.81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9.36	5.93	23.36	-4.68	3.09
비교지수	-7.01	2.76	22.24	-5.88	0.71
수익률변동성(%)	17.62	14.81	10.14	17.59	12.57

주 1) 비교지수 : (1 * 0.65*[MSCI_CH]+0.25*[KOSPI]) + (0.1 * [CALL 금리])

주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3)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4)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인 '기간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5)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고 1년 미만인 경우(예:8개월)로서 주식 또는 주식관련상품(주가지수연계증권 등)에 투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수익률을 연간 수익률로 환산한 '연환산 수익률'을 말합니다.

주6)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7)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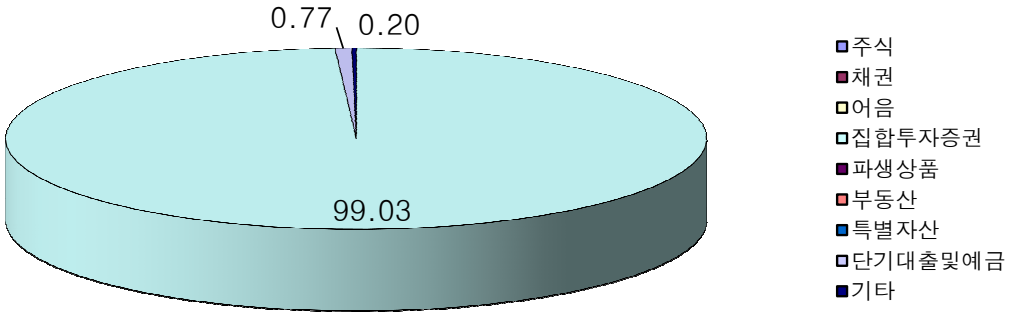

[2019.04.24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165	0	0	0	0	0	1	0	167
	(0.00)	(0.00)	(0.00)	(99.03)	(0.00)	(0.00)	(0.00)	(0.00)	(0.00)	(0.77)	(0.20)	(100.00)
합계	0	0	0	165	0	0	0	0	0	1	0	167
	(0.00)	(0.00)	(0.00)	(99.03)	(0.00)	(0.00)	(0.00)	(0.00)	(0.00)	(0.77)	(0.20)	(100.00)

주1) ( ) 내는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을 나타냅니다.

주2) 어음 : 양도성예금증서(CD) 및 어음을 말합니다.

주3) 장내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위탁증거금의 합계액을 말하며, 장내파생상품 평가액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주4) 장외파생상품은 파생상품의 거래에 따른 손익을 말하며, 장외파생상품 평가액(명목계약금액이 있는 경우 명목계약금액을 포함함)은 국내/외 파생상품별 구성현황에 기재합니다.

※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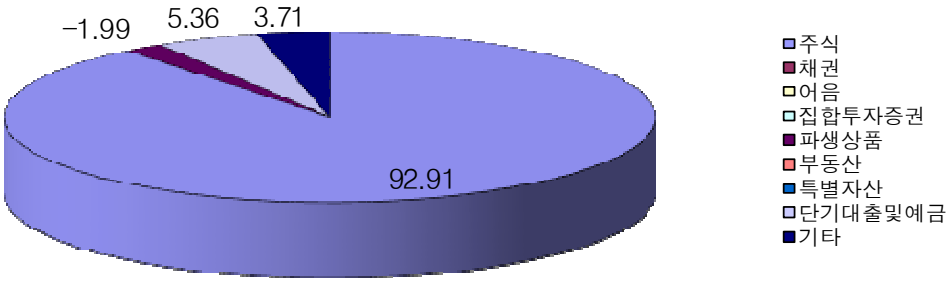

[2019.04.24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0	0	0	0	0	0	0	0	0	5	7	1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1.23)	(58.77)	(6.00)
HKD	138	0	0	0	0	-3	0	0	0	0	0	135
	(102.00)	(0.00)	(0.00)	(0.00)	(0.00)	-(2.00)	(0.00)	(0.00)	(0.00)	(0.00)	(0.00)	(72.00)
USD	36	0	0	0	0	-1	0	0	0	5	0	40
	(89.59)	(0.00)	(0.00)	(0.00)	(0.00)	-(2.52)	(0.00)	(0.00)	(0.00)	(12.94)	(0.00)	(21.00)
합계	174	0	0	0	0	-4	0	0	0	10	7	187
	(92.91)	(0.00)	(0.00)	(0.00)	(0.00)	-(1.99)	(0.00)	(0.00)	(0.00)	(5.36)	(3.71)	(100.00)

NH-Amundi 업종대표주 증권모투자신탁1호[주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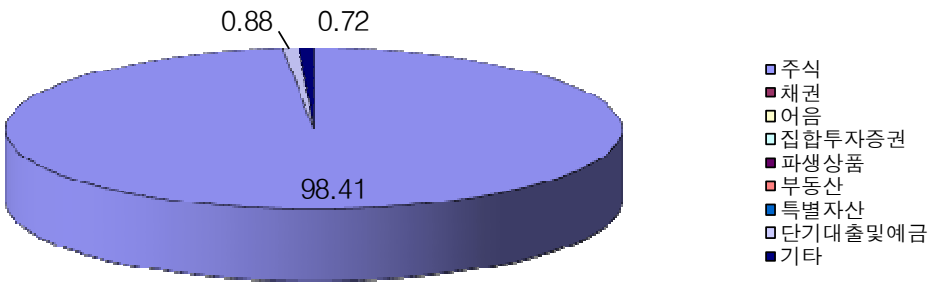

[2019.04.24 현재 / 단위 : 억원,%]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자산	기타			
KRW	302	0	0	0	0	0	0	0	0	3	2	307
	(98.4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8)	(0.72)	(100.00)
합계	302	0	0	0	0	0	0	0	0	3	2	307
	(98.4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8)	(0.72)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와 투자자 및 집합투자기구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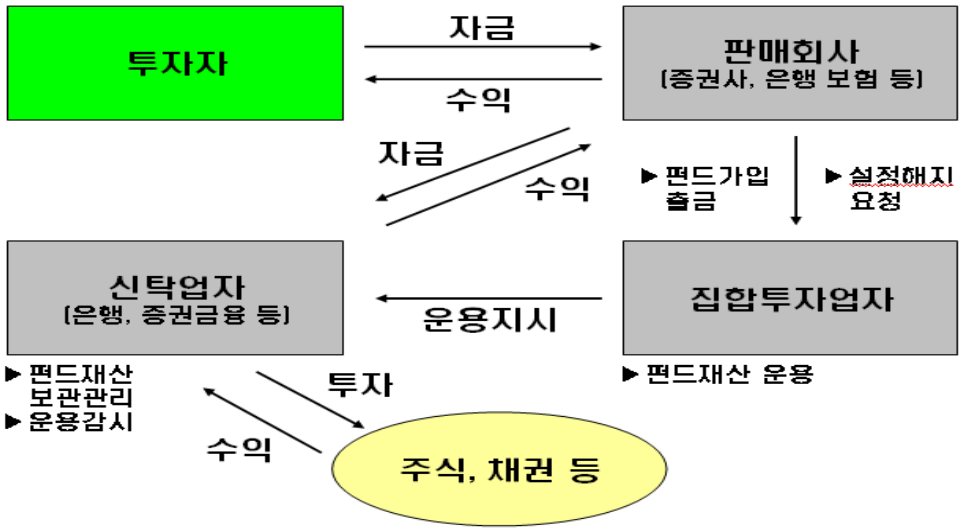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NH-Amundi 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8 길 2 (여의도동, 농협문화복지재단빌딩 10 층) 연락처 : 02-368-3600 (www.nh-amundi.com)	
회사연혁	2002.04	농협과 CAAM 간 자산운용회사 설립에 관한 MOU 체결
	2003.01	법인설립 (자본금 300 억, 농협 60%, CAAM 40%)
	2003.03	금감위로부터 투신업 본허가 취득
	2003.08	자문업 등록
	2003.10	투자일임업 등록
	2004.05	Asian Investor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운용사 선정
	2005.03	Asia Asset Management 로부터 2004 한국 최우수 신상품상 수상
	2006.09	국민연금 SRI 펀드 운용사로 선정
	2009.02	"라틴아메리카 포르테" 제로인 Best 펀드 선정
	2009.10	CAAM 홍콩/싱가포르에서 운용하고 있는 한국주식 투자펀드에 대한 투자자문 계약 체결
	2010.01	CAAM 의 모회사인 Credit Agricole 그룹이 Societe Generale 그룹과 75 : 25 의 비율로 결합하여 AMUNDI 로 재출범
	2010.01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금융감독원선정 2009 년 최우수 금융신상품상 수상 "2010 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중앙일보 주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 수상
	2010.03	"1.5 배 레버리지 인덱스" 제 15 회 매경 금융상품대상 은상 수상
	2010.03	헤럴드경제 선정 인도네시아포커스 펀드 헤럴드경제 펀드대상 최우수 해외펀드상 수상
	2010.11	Asian Investor 지 선정 Korea Award 최우수 사회책임투자펀드상 수상
	2012.03	농협금융지주 출범
	2014.02	제로인 선정 2014 대한민국 펀드 어워드 투자자보호 최우수상 수상
	2014.05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 주최 2014 고객사랑브랜드대상 자산운용부문 수상

	2014.05	Asian Investor 지 선정 2014 Korea Award 사회책임투자부문/채권운용부문 수상
	2016.05	NH-CA 자산운용에서 NH-Amundi 자산운용으로 사명 변경
	2016.06	아시안인베스터 '국내중소형주 최우수운용사' 수상
	2016.11	대한민국 증권대상 '올해의 펀드매니저 및 리스크 관리부문 최우수상' 수상(서울경제)
		헤럴드 펀드대상 '최우수 국내 펀드-일반성장형, 중소형, 채권형' 부문 수상
	2016.12	대한민국 펀드대상 '퇴직연금 베스트 펀드' 수상(머니투데이)
	2017.02	매일경제 증권대상 '국내주식형 베스트' 수상
	2017.03	Morningstar Awards '중소형주식 부문 펀드상' 수상
	2017.07	Amundi 의 Pioneer(파이오니어) 인수
	2017.11	서울경제 대한민국 증권대상 '국내펀드부문 최우수상' 수상
		헤럴드 펀드대상 '최우수 국내 펀드-고배당주, 중소형주' 부문 수상
	2017.12	대한민국 펀드대상 '올해의 혁신 펀드-글로벌후순위채' 수상(머니투데이)
자본금	400 억	
주요주주	농협 70%, Amundi 30%	

나.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선관의무 등

①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 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행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집합투자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집합투자업자의 당해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의 책임

①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집합투자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신한아이타스㈜**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항 목	'17. 12 말	'16. 12 말	항 목	'17. 12 말	'16. 12 말
현금 및 예치금	91,465	91,940	영업수익	41,192	38,579
유가증권	3,074	1,856	영업비용	23,536	19,719
유형자산	500	711	영업이익	17,656	18,859
기타자산	9,312	9,308	영업외수익	42	29
자산총계	104,351	103,817	영업외비용	166	164
예수부채	-	-	법인세	4,010	4,237
기타부채	7,795	6,827	당기순이익	13,523	14,487
부채총계	7,795	6,827			
자본금	40,000	40,000			
이익잉여금	56,512	56,988			
자본총계	96,556	96,989			

라. 운용자산 규모

[2019.05.17 현재 / 단위 : 억원]

구분	증권집합투자기구							부동산및부동산파생	특별자산 및특별자산파생	혼합자산 및혼합자산파생	단기금융	총 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계약형	재간접형	파생형	기타					
수탁고	23,857	38,840	9,774	0	4,619	40,901	0	6,386	31,941	724	83,062	240,104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1) 집합투자업자는 당해 투자신탁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하여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투자자문회사를 선정할 시 그 보수는 집합투자업자의 보수로부터 지급합니다.

(2)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은 'Amundi (UK) Limited' 의 자문을 받습니다. 투자자문회사 및 투자자문회사로부터의 투자자문 업무 내용은 시장상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하여 사전 통지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변경된 내용은 변경 등록(또는 정정신고) 후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해당펀드	투자자문회사	투자자문회사의 업무범위
NH-Amundi 차이나 포르테 증권모투자신탁[주식]	Amundi (UK) Limited	운용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투자정보와 자료 제공 및 경제 전망에 관한 조언 등

(3) 회사의 개요

회사명	Amundi (UK) Limited
주소	41 Lothbury, London EC2R 7HF, United Kingdom
회사 개요	프랑스 파리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글로벌 자산운용회사인 Amundi Asset Management의 자회사로 다양한 투자자산운용, 트레이딩,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HSBC 서울지점)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칠패로 37 02-2004-0123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hsbc.co.kr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증권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의 무]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규약,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투자신탁 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 결과

[책 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신한아이타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3 02-2180-0418
회사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shinhanaitas.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KIS채권평가	한국자산평가	NICE피앤아이	에프엔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29
연락처	02-3215-1400	02-399-3350	02-398-3900	02-721-5300
설립일	2000. 6. 20.	2000. 5. 29	2000. 6. 16	2011. 6. 9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koreaap.com	www.nicepricing.co.kr	www.fnpricing.com

나. 주요업무

-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투자자총회등

(1) 투자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의 수익자에게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또는 신탁계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한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 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 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 총회의 소집통지는 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하며, 예탁결제원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 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 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 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서면에 의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여 행사한 의결권의 수에 산입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로부터 제출된 의결권행사를 위한 서면과 의결권행사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익자총회일부터 6 월간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며,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서면 및 자료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 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기수익자총회일 1 주전까지 연기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 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3) 투자자총회 결의사항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자본시장법 제 190 조제 5 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 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투자신탁의 종류(법 제 229 조의 구분에 따른 종류를 말한다)의 변경. 다만, 투자신탁을 설정할 때부터 다른 종류의 투자신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고, 그 내용이 신탁계약서에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2)-1.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 80 조 제 1 항 제 3 호의 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 420 조제 3 항제 1 호 및 제 2 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 10 조제 1 항제 6 호부터 제 8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환매금지형투자신탁(존속기간을 정한 투자신탁으로서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투자신탁의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5)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6)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투자신탁의 합병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작성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법제 188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법제 193 조제 2 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2. 법제 193 조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와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그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수익자의 총수가 1 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시행령제 224 조의 2 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법시행령 제 223 조 각 호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경과한 이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3) 및 (4)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공시하거나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 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법 제 87 조제 8 항제 1 호・제 2 호에 따라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회계감사]

가.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결산기마다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부속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호의 날부터 2월 이내에 이 투자신탁재산에 대하여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1) 회계기간의 말일

2) 투자신탁의 해지일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88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 회 이상 해당 투자신탁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 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 제 1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①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 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②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설정일 또는 성립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사항
  ③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④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해당 운용기간 중 매도한 주식가액의 총액을 그 해당 운용기간 중 보유한 주식의 평균가액으로 나눈 비율인 매매회전율
  ⑤ 그 밖에 법시행령 제 92 조제 3 항에서 정하는 사항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②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③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 개월마다 1 회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벙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④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 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 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 발송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 89 조제 2 항제 1 호 및 제 3 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②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③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 내용
④ 법제 247 조제 5 항 각 호의 사항
⑤ 법시행령 제 270 조제 2 항에서 정하는 사항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수탁회사·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지체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법시행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 123 조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집합투자기구의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1 개월간 계속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원본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임의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부동산・특별자산투자재간접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 법시행령 제 242 조 제 2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시장성 없는 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
   -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또는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 다만, 이미 취득한 것과 같은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지상권・지역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 및 사업수익권・시설관리운영권 등 특별자산 관련 중요한 권리의 발생・변경

- 금전의 차입 또는 금전의 대여

11) 그 밖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 월 30 일까지 직전 연도 4 월 1 일부터 1 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단위:백만원]

이해관계인		거래의 종류	자산의 종류	거래 금액
성명(상호)	관 계			
NH투자증권	계열회사	위탁거래	주식	2,565

※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시행령 제 84 조)

▪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 분의 30 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 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증권거래	1) 선정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운용전문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됨
장내파생상품거래	투자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용 어 풀 이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투자회사	설립자본금을 바탕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혼합자산집합투자기구	혼합형 펀드로서 집합투자재산을 주식, 채권, 특별자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폐쇄형	환매가 가능하지 않은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후취수수료	펀드 환매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선물환거래	미래의 거래 환율 가격을 현재 시점에서 미리 정해놓는 거래를 말합니다.
금리스왑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하여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성과보수	집합투자업자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받는 보수를 말하여 사모 펀드에만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